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86호

2022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3차공고

2022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기술분야의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에너지산업의 기반조성

Ⅱ. 사업내용

□ 개 요

○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

구분	프로그램	과제수	지원기간	과제당 예산
교육훈련	① 중견기업 특화 인력양성	총 1개	'22.9~'26.12 (52개월 지원)	- 3.75억원(1,2차년도) - 5억원(3차년도 이후)
	- 건물용 연료전지 중견기업 특화 인력양성	1개		
해외연계	②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총 5개 이상	'22.9~'23.8 (1년 지원)	1명당 1억원 이내 - 과제당 5명 이내

*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연차별 기간 조정 가능
** 연차별 수행기간 산정방법은 첨부의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참조
*** 해외연계의 경우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과제 수 변동 가능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① 중견기업 특화 인력양성

○ **(사업목적)** 저탄소신산업·제조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에너지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지역거점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석·박사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배출인력의 중견기업 취업 연계 기여

○ **(지원분야)** 건물용 연료전지 분야

분야	세부 분야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 활성화 및 탄소 중립 이슈에 따른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석·박사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지원개요**

- (사업기간) '22.9 ~ '26.12 (52개월 내외)

- (사업예산) 1, 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75억원 내외(3차년도 이후 5억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지원

※ 상세 지원내용은 『2022년도 3차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및 기술개요서의 의무사항 확인

②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 **(사업목적)** 에너지신산업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우수인재를 해외 유수기관에 파견하여 에너지기술분야 첨단인재 육성

○ **(지원분야) 에너지기술 중점분야**
  * 에너지 중점기술(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9)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신소재,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원자력, 청정발전, 에너지안전, 스마트자원개발, 순환자원,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 사이버보안

○ **지원개요**

- (사업기간) '22.9 ~ '23.8 (1년)

- (사업예산) 1인당 1억원 이내, 과제당 5명 이내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지원

- (주요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기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참여 석·박사 학위 과정생*을 현지 파견(최소 6개월 ~ 최대 12개월)
  * 국내 대학 학위 과정생으로 한국 국적 소지자

  - 사업계획서 작성시 3절 사업 추진계획>4. 위험, 장애 요인 해결방안>마. 코로나19등 으로 파견 연구자 미출국시 대응 방안 및 출국과 준하는 조건의 교육수준, 연구경험 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안)을 반드시 수립하여 작성할 것.
  - (과제수행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미출국에 대한 사유서 및 원격연구 계획서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며, 전담기관 승인시 미출국 원격연구를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되, 해외기관과 협의된 원격연구에 대한 추진내용, 연구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 결과를 반영함.

※ 상세 지원내용은 『2022년도 3차 에너지인력양성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및 기술개요서의 의무사항 확인

Ⅲ.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사업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이 가능함

□ 기술료 징수 여부

○ 공고된 과제는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면제 대상임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인력양성사업 학생연구원 과제참여 기준**

- 학생연구원별 참여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함

○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 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 **인력양성사업 연구수당 계상 기준**

-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에서 산정하고,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력양성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

- 간접비는 각 수행기관별로 직접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포함, 현물제외)의 10% 이내 산정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Ⅳ. 신청 자격 등

<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안내 >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대학)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지자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호 내지 제9의5호,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지원분야별 기술개요서內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과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 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율은 적용함.

□ 지원제외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공동)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신청(주관/공동)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및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 내용(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년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회계연도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전산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마감일 전날까지 제출 권고)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견기업이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또는 기술 내용 및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공고 일정 : 8월 1일(월) ~ 8월 30일(화), 30일간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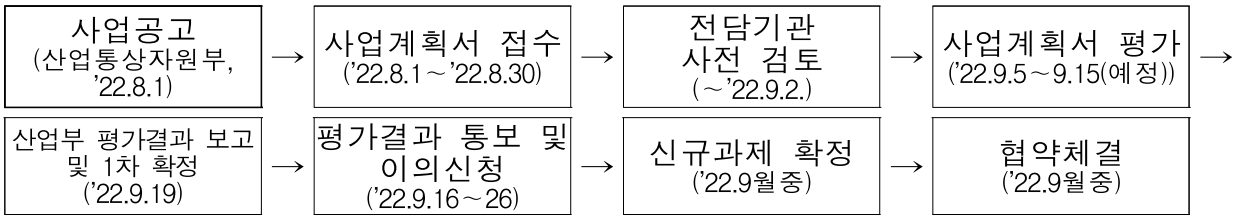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음(이의신청 기간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함)

-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8864호(2022.12.11.),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6항 내지 제7항

□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프로그램별 평가지표는 『2022년도 3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하여 작성할 것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No.	우대사항	가점
1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1점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점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가점을 합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신청하는 경우(3점)

Ⅵ. 근거법령 및 기준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 상기 규정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Ⅶ.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전산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 **제출기한**

구분	내 용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http://genie.ketep.re.kr)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한	’22.08.01(월) ~ ’22.08.30(화) 18:00까지(접수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전산 등록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접수 완료를 권고하며,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제출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제출 서류 사항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부	▪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각 1부	▪ 온라인 입력(시스템) *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자료 제출)

*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기타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양식 1페이지의 서류 목록 참조

□ 접수처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신규평가시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비율)이 미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 동일한 대학에서 2개 이상의 과제에 유사한 내용(사업계획서 내용, 참여연구원 등)으로 복수 지원한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면제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프로그램별 기술개요서 및 세부 지원내용을 반드시 참조

Ⅷ. 문의처

□ 사업설명회

○ 목적 : 2022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3차 공고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관련 상세내용 설명

○ 개최 일자 및 장소(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일 자	지역	개최 장소	시 간
'22.8.11.(목)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5층 회의실(사군자실) (대전역 서광장)	14:00~16:00

□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사업실 (02-3469-8454, 8455)

내역사업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교육훈련	① 중견기업 특화 인력양성	02-3469-8454
해외연계	②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02-3469-8455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